안전은 권리입니다

2021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편람

[기간산업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CONTENT

Ⅰ 평가 목적 및 개요 01

Ⅱ 평가 대상 및 방법 05

Ⅲ 지표 체계 17

Ⅳ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용 29

Ⓐ 안전보건경영체제 31

Ⓑ 안전보건관리 39

Ⓒ 안전보건활동 49

Ⓒ-1 직영 및 도급 사업장 49

Ⓒ-2 건설공사 발주 사업장 59

Ⓓ 안전보건성과 69

I

평가 목적 및 개요

Ⅰ. 평가 목적 및 개요

1 평가 목적

□ **공공기관**에서 **'안전'**이 **제1의 가치**가 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범국민적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 공공기관이 **안전보건경영체제**를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인 위험관리 실시**를 통해 **안전보건수준 향상 도모**

2 평가 개요

< 평가근거 >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4호)
❖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기획재정부)

□ 평가 의의

○ 공공기관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한 **활동** 및 **그 수준**에 대한 평가(고용노동부)

* 사업장 : 본사, 사업소, 지사, 도급.건설발주 현장 등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노력 등 **안전보건 수준**을 **경영평가**에 **반영**(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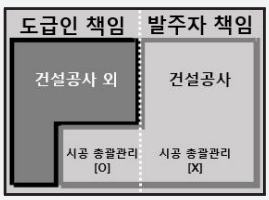

도급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함(**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업무포함)

☞ **건설공사를 도급 준 경우,** 그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로 구분**

* 공공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건설공사 주체 (예시 : 발전소 내에서 유지·보수 공사 등)

□ 평가 수행 체계

○ **[주관]** 고용노동부 - **[수행]** 안전보건공단

□ 평가 내용

○ P-D-C-A* 관점에서 본평가와 현장작동성평가로 구분하여 공공기관 유형·특성별 **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성과** 등을 평가

* Plan(계획 수립) - Do(실행 및 운영) - Check(점검 및 시정조치) - Action(개선)

3 전략체계

□ 공공기관 안전경영 정착을 위한 단계적 확대

비 전	안전하고 건강한 공공일터 조성
목 표	'22년 까지 사고사망자 절반이상 감소
방 침	안전 중심 경영 패러다임 전환 / 공공기관의 안전 활동 강화 / 전문성 · 신뢰성 기반의 평가품질 유지

접근 전략	도입	성장	발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 기관 / 전체 공공 기관
	공공기관 본사	본사 + 현업 사업장(도급발주현장 포함)	
	시스템 중점 (법준수, 대책이행)	시스템 중점 + 현장 중점 (시스템의 현장 적용·실행)	
	공공 부문	공공 부문 + 민간 확산	전체 공공사업장 (민간부분 선도)
	1분기	연중 상시	

4 추진방향

① 공공기관의 사고사망 안전활동 평가 커버리지 확대

☞ • 현장작동성평가 대상 • 보호대상

② 법·제도, 그밖에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평가지표 고도화

☞ • 건설공사 지표체계 개편 • 도급인 조치 의무 확인 강화

③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신뢰성 및 활용성 제고

☞ • 공공기관 현황 실태조사 • 평가결과 환류

Ⅱ

평가 대상 및 방법

Ⅱ. 평가 대상 및 방법

1 평가 대상

□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그룹(6개 그룹)

그룹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Ⅰ형	Ⅱ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	
169개소	10개소	26개소	12개소	41개소	41개소	39개소

□ 평가대상기관 현황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130개소)

유형		공공기관명
공기업 (36개)	공기업Ⅰ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Ⅱ (26개)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 기관 (94개)	기금관리형 (12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41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강소형 (41개)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21년도 평가대상 추가(강소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기타공공기관**(39개소)

유형	공공기관명
연구실 등 (39개소)	광주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코레일유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뇌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 향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확정(기재부)에 따라 연계 수행

○ **평가대상기관 선정 및 평가그룹 분류 근거**

①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고시에 따른 평가계획(고용노동부)

②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기획재정부)

③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에 따른 주관부처(기획재정부) 요구사항(기타공공기관)

2 지표 적용 유형

□ 유형분류 기준

○ 공공기관의 사업 **특성·위험도를 고려**하여 **기간산업형**과 **서비스집중형**의 2개 유형으로 구분·적용

- **(기간산업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다음의 사업과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사고발생 위험이 다소 높은 기관

  ①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건설관리

  ② 항공·항만·철도·도로 등 관련 기반시설 유지·운영

  ③ 석유·전기·가스·난방 등 유·무형의 공공재화의 생산·공급

  ④ 기타 정부부처에서 요청하는 공공기관 등

- **(서비스집중형)** 금융, 보험, 보증 등의 행정서비스, 위락·공원시설 관리서비스 및 자격·검정·검사·감독·시험·연구 등 기술서비스 중심업무를 수행하며 기간산업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

□ 유형별 기관현황

○ 기간산업형 : 28개 기관

구 분		공공기관명
공기업 (26개)	공기업Ⅰ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Ⅱ (16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준정부 기관 (2개)	위탁집행형 (2개)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 서비스집중형 : 141개 기관

구 분		공공기관명
공기업 (10개)	공기업Ⅱ (10개)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 기관 (92개)	기금관리형 (12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39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강소형 (41개)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타 공공 기관 (39개)	연구실 등 (39개소)	광주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코레일유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뇌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3 평가체계 및 시기

□ 평가 체계

○ 평가는 **본평가**와 **현장작동성평가**로 구분 실시

- **(본평가)** 기관 본연의 사업과 도급·건설발주 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활동 수준**을 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기관 본연의 사업과 도급·발주 등이 이루어지는 특정 사업장 또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활동 이행 수준**을 평가

□ 평가 절차

○ 당해년도에 **현장작동성평가** 후 익년도에 **본평가** 실시

❶ 현장작동성평가 ⇒ ❷ 본평가 ⇒ ❸ 최종 평가결과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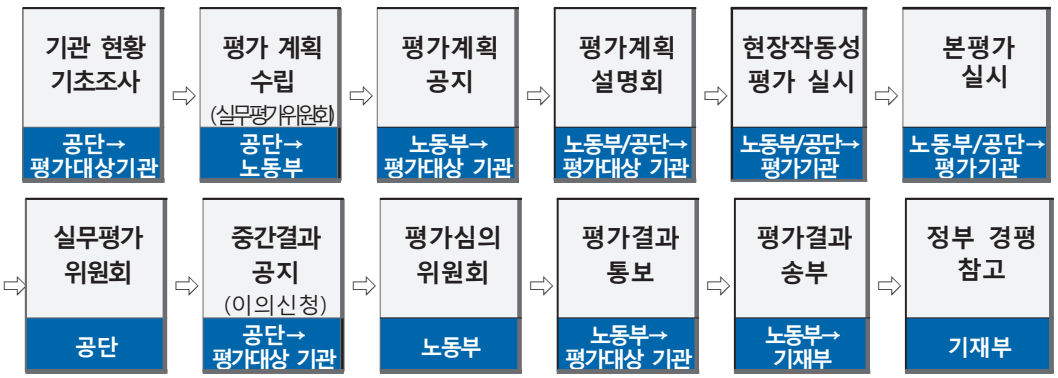

○ 평가 세부절차

- **(본평가)** 기관별 평가일자 공지(12월) → 본평가 실시

- **(현장작동성평가)** 기관별 평가일자 공지(설명회 이후) → 기관별 평가대상 사업장(장소) 공지(평가 10일전) → 현장작동성평가 실시

□ 평가 시기

○ **현장작동성평가**는 기관 유형, 규모,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기간산업형 및 건설발주사업장은 2일, 서비스집중형 1일** 동안 실시

○ **(현장작동성평가)** '21년 하반기 평가시기 중 1일 ~ 2일

구 분	평가시기 및 대상	
평가시기	'21년 7월 ~ 11월	
평가대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도급조치 의무공사 포함)	건설발주사업장
평가일수	▼ 기간산업형 : 2일 ▼ 서비스집중형 : 1일	2일

※ 본사만 있는 기관(항공·항만 시설 보유 기관 제외)과 기타공공기관(사고사망 발생기관 제외)은 본평가 시 실시

○ **(본평가)** '22년 상반기 평가시기 중 2일

구 분	평가시기 및 대상
평가시기	'22년 1월 ~ 2월
평가대상	2021년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 전체 공공기관
평가일수	2일

※ 평가시기는 별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반 구성

○ 기관 유형, 규모,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3~5명의 안전전문가로 구성

- **(현장작동성평가)** 지표 적용 유형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3명이내로 구성
  ※ 기간산업형 및 서비스집중형 3명/반 운영(단, 건설발주 사업장은 공사규모에 따라 2명~3명/반으로 탄력적 운영)

- **(본평가)** 현장작동성평가 지표범위를 고려하여 반별 **4~5명**으로 구성
  - 현장작동성평가(직영 및 도급 사업장) 실시 대상기관은 4명, 미실시 기관은 5명이 수행
  - 고용노동부 1명, 외부전문가 1명, 안전보건공단 3명으로 탄력적 운영

4 현장작동성평가 대상

□ 대상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따른 **정부경영평가 대상 전체 기관과**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등급제 주관부처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의 사업장 중,

- **직영 및 도급(건설포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선정

① 자체청사 및 시설(교육장, 수련원, 연구실 등)을 보유 여부

②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보유 여부

③ 건설공사 이외에 도급사업 실시 여부

④ 건설공사 도급사업 실시 여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기초조사표』와 산재가입현황 등을 활용

- **건설 발주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 선정

① 냉동·냉장창고, PC 및 철골,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층고 6m 이상 거푸집동바리, 2m 이상 굴착, 비계설치·해체, 용접 및 밀폐공간 작업 등 사망사고 다발작업 보유

② 타워크레인(이동식 포함), 항타·항발기, 리프트 등 유해·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유

③ 굴삭기 및 트럭 등 중장비 작업 보유

④ 기타 과거 사고사망 발생 현장 또는 시공사 등

□ 직영 및 도급 사업장(건설포함) : 93개 기관

구 분		공공기관명
기간 산업형 (28개)	공기업 Ⅰ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Ⅱ (16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위탁집행형(2개)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서비스 집중형 (65개)	공기업Ⅱ(8개)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해양환경공단
	기금관리형 (11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28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17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타공공기관(1개)	국방과학연구소

□ 건설발주 사업장 : 42개 기관

구 분		공공기관명
공기업 (21개)	공기업 Ⅰ (8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Ⅱ (13개)	강원랜드(주),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주),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준정부 기관 (13개)	기금관리형 (4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집행형 (8개)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1개)	한국광해관리공단
기타공공기관 (8개)		국방과학연구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5 평가결과 심의 등

□ 실무평가 위원회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실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적용하는 지표유형 결정
- 공공기관의 현장작동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평가 결과에 따른 잠정등급 결정
- 기타 평가 실시과정 중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 등 심의

실무평가 위원회 구성

구성	◇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 - (위촉직) 학계·노동계·민간 전문가

□ 평가심의 위원회[고용노동부]

○ 심의・의결 기구로서 안전보건공단(실무평가 위원회)에서 상정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최종 결과(평가등급, 점수 등) 결정**

○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한 사항

- **사고사망 연속 또는 증가기관*** 등급 하향 조정 등

* ①안전관리 소홀로 동종 사망사고 연속발생
②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사고 증가 등

평가심의 위원회 구성

구성	◇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위원장) 고용노동부 담당 정책관 - (당연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 안전보건공단 평가관계자 - (위촉직) 노동계·경영계·학계·민간 전문가 등

6 평가결과의 제공

□ 정부 경영평가단 제공

○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는 정부 **경영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경영평가단 제공**

※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상「경영관리 범주」-「사회적 가치 구현」-「안전 및 환경」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기재부 송부)

□ 개별기관 송부

○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는 해당기관의 평가내용에 한하여 송부

7 기관 협조사항

○ 안전활동 수준평가 시 평가장소 및 증빙자료 등 사전 준비

○ 경영진 및 근로자 등 면담 지원 및 현장작동성평가시 현장 안내

○ 평가관련 증빙자료는 전산파일(hwp, pdf 등), 내부전산망(ERP, EHS 시스템 등)을 이용한 on-line 형태, 종이문서 출력 및 제본 등 기관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

※ 현장작동성평가 관련 증빙자료는 대상 지사·사업소 등에서 확인

※ 평가기간 중 제공한 증빙자료는 필요시 이의제기 전까지 평가위원이 보관

○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는 **불필요한 부대지원**(식사·선물·향응·의전 등) **절대 금지**

※ 평가기간 중, 청렴도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공공정책과),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에서 모니터링단 운영 예정

○ COVID-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단계에 따라 주무부처 협의 등을 거쳐 평가 방법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Ⅲ

지표 체계

1 지표 개요

□ 지표 구성

○ 공공기관의 안전보건활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안전보건경영체제」,「안전보건관리」,「안전보건활동」,「안전보건성과」4개 분야로 구성

- **(안전보건경영체제)** 최고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안전보건경영방침상 목표 실행을 위한 조직의 안전역량·예산 및 규정 등의 기틀 마련 수준을 평가
-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경영방침과 규정 등을 바탕으로 직영·수급업체 등의 운영계획 및 관리활동, 참여도 등을 평가
- **(안전보건활동)**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상태 및 시정조치 활동을 평가
- **(안전보건성과)** 안전경영계획 목표 및 과제, 사회적 가치 확산활동에 대한 계획 이행·환류 등의 성과 수준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

○ 평가 분야는 단위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분

- 평가유형, 분야별로 계층화한 후 전문가 집단이 평가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는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 을 이용**

*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 평가기준이 다수이고 복합적인 경우, 이를 계층(Hierachy)화하여 주요 요인과 그 주요 요인을 이루는 세부 요인들로 분해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상대 비교(Pairwise Comparison)하여 중요도를 산출하는 분석 방법

□ 평가 체계 변화

○ 2021년도 공공기관 사업장의 실행력 향상을 위하여 현장작동성평가 강화 및 확대

주요 확대 및 강화 내용

(2020년) 현장중심 평가로 전환	(2021년) 현장평가 강화 및 대상 확대
✤ 현장 실행사항 평가지표 중심으로 전환 ✤ 업무 특성 · 위험도에 따른 평가지표 구분 - 기간산업형 · 서비스집중형 ✤ 사고사망 감소 노력 및 성과 반영 강화	✤(촉진) 건설공사 및 도급인 의무 조치 ✤(확장) 현장작동성평가 대상 확대 ✤(확대) 안전보건활동 보호대상 ✤(정보) 기타 이슈사항 반영 등

❶ 건설발주 사업장 평가항목 확대 및 강화

- 기존 안전보건대장 위주 평가체계에서 공사 전반에 걸친 발주자의 안전보건**체계·관리·활동·조치 형태의 세부지표로 고도화**

기존

분야	평가 항목	세부 지표수
ⓒ 안전 보건 활동	2.1.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 보건활동	2
	2.2.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 보건활동	2
	2.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 보건활동	2
	2.4.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2
	2.5. 발주자의 시공자 안전보건 활동 관리	3
	2.6 건설공사 발주현장 안전 보건환경 조성	2

개편

분야	평가 항목	세부 지표수
ⓒ 안전 보건 활동	2.1.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 관리업무 체계	3
	2.2. 건설공사 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활동	4
	2.3. 설계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3
	2.4. 시공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3
	2.5.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2
	2.6.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 조치	4
	2.7.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 환경 조성	3

※ (기존) 6개 평가항목, 13개 세부 평가내용 → (개편) 7개 평가항목, 22개 세부평가 내용

- 안전보건활동분야(300점 만점) 내에서 「C-2.건설발주 사업장」 **배점 20% 상향(150점 → 180점)**

❷ 도급 평가항목 강화 및 구체화

- 도급사업 관리체계 및 안전보건활동 이행·환류 수준이 평가 가능토록 세부 평가내용 보완

기존

분야	평가 항목	세부 지표수
Ⓑ 안전 보건 관리	7.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조치	2
	8.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등 인프라 지원	3

개편

분야	평가 항목	세부 지표수
Ⓑ 안전 보건 관리	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4
	8.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3

※ (기존) 2개 평가항목, 5개 세부 평가내용 → (개편) 2개 평가항목, 7개 세부평가 내용

- **시설 유지보수 등 소규모 도급공사**를 **현장작동성평가 시 포함**
- 기타 도급인의 조치 의무에 대한 명확한 전달과 수용도 제고를 위해 용어 수정(작업장 → 직영 및 도급사업장)

❸ 안전보건활동 보호대상 확대

-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사업주 포함)"으로 확대**
-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근로자**(경비업무 등)를 **건강 유지·증진** 평가항목에 반영

❹ 평가항목 연계평가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등**의 현장 이행 수준을 **최고경영자 면담 평가항목**(Ⓐ-1) 결과에 반영

평가 항목	연계 평가 항목
Ⓐ-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8.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3. 사고사망 감소 성과

❺ 현장작동성평가 선정 범위 확대

기존	개편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중점기관** 중 선정 ✤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현장 ✤ 관계부처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정부 경영평가 전체 대상** ✤ 사망사고 다발작업을 보유한 건설공사 발주 현장(**공사규모 제한 없음**) ✤ 관계부처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

❻ 현장작동성평가 역량 집중

- 현장작동성에 따라 **재해 및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역량 집중**
  - * **(안전보건관리분야)** 위험성평가, 관리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 * **(안전보건활동분야)** 전체 평가항목
- 기관 유형, 규모,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기간산업형 및 건설발주 사업장은 2일, 서비스집중형 1일** 실시

❼ 기타 사항

- **건설현장 일요휴무제***, 화재위험작업 **화재감시자 배치** 등의 이슈 사항을 평가 착안사항에 반영

  ※ **요일별 근무자수 대비 사고사망자 발생 확인 결과(2016년~2018년), 건설업의 경우 일요일이 평일보다 사망 위험도가 약 2배 높음**

  [출처 : 중대재해 유형별 현황 분석 연구(2019년 11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점수 산정방법

○ 세부 평가내용의 달성정도를 5단계 평가 실시(사고사망 감소성과는 산식에 따라 산출)

- **유형·분야별 평가항목 득점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1,0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화**

○ **평가지표 결측항목 발생시 환산**

- **안전보건관리 및 안전보건활동 분야는** 해당되는 평가 항목이 없는 경우 적용받은 **항목만으로 평가 후 이를 해당 분야에서 환산**

• **예시)** $$\text{환산점수} = \frac{\text{배점의 합계}}{\text{결측제외 배점의 합계}} \times \text{득점의 합계}$$

분야	평가항목	배점	득점	환산점수
Ⓑ **안전보건관리 (8항목)**	**합 계**	**100**	46.0	65.71
	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30	30.0	42.85
	2. 위험성평가	30	-	-
	3. 안전보건교육	40	16.0	22.86

○ **본평가와 현장작동성 평가결과의 산출 비중**

-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분야는 아래의 비율**로 반영하되, 기관 본평가와 현장작동성평가 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지표별로** 본평가 책임평가위원이 일부 **조정 가능**
- 단,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지표 및 세부평가내용이 본평가와 현장작동성평가 중 어느 하나에서 **전체가 확인되는 경우** 그것을 **100% 반영**

<본평가와 현장작동성평가의 산출 비중>

구분	기간산업형		서비스집중형		건설공사 발주**	
	본평가	현장작동성평가	본평가	현장작동성평가	본평가	현장작동성평가
B.안전보건관리*	50%	50%	70%	30%		
C.안전보건활동	-	100%	-	100%	20%	80%

* 현장작동성평가 비대상 지표는 본평가 결과를 100% 반영

** 현장작동성평가 내용으로 전체 확인이 되는 경우 현장작동성평가를 100% 반영

□ 결과통보 및 제출

○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에 송부

- 평가그룹별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종료 후 기획재정부 **통보**
- 각 기관별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

※ 기관별 평가결과는 최종 점수, 절대등급, 평가그룹별 상대등급으로 산출되나, 공개 통보범위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평가지표 총괄표

○ 현장작동성평가 비대상 기관은 본평가시 전 지표에 대하여 평가

분 야	평가 항목	배점(점)		지표적용(개)	
		❶	❷	본평가	현장작동성
	합 계	**1,000**	**1,000**	**23**	**18**
Ⓐ 안전보건 경영체제 (5항목)	**소 계**	**250**	**250**	**5**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60	60	○	×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60	60	○	×
	3.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30	○	×
	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50	50	○	×
	5. 안전경영계획 수립	50	50	○	×
Ⓑ 안전보건관리 (8항목)	**소 계**	**250**	**250**	**8**	**4**
	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30	30	○	×
	2. 위험성평가	40	40	○	○
	3. 안전보건교육	20	20	○	×
	4. 관리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40	40	○	○
	5. 비상시 대비 및 대응	20	20	○	×
	6.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20	20	○	×
	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50	50	○	○
	8.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30	30	○	○
Ⓒ 안전보건활동 (14항목)	**소 계**	**300**	**300**	**7**	**14**
	[Ⓒ-1 직영 및 도급(건설포함) 사업장]	**120**	**300**	**0**	**7**
	1.1. 기본 안전보건관리	10	40	×	○
	1.2.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15	40	×	○
	1.3.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	15	40	×	○
	1.4. 추락·낙하 등 위험방지 조치	25	50	×	○
	1.5. 화재 등의 위험방지 조치	25	50	×	○
	1.6.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활동 수준	15	40	×	○
	1.7.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15	40	×	○
	[Ⓒ-2 건설발주 사업장]	**180**	**-**	**7**	**7**
	2.1.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체계	20	-	○	○
	2.2. 건설공사 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활동	20	-	○	○
	2.3. 설계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20	-	○	○
	2.4. 시공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25	-	○	○
	2.5.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20	-	○	○
	2.6.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조치	50	-	○	○
	2.7.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25	-	○	○
Ⓓ 안전보건성과 (3항목)	**소 계**	**200**	**200**	**3**	**0**
	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40	40	○	×
	2. 안전문화 확산	80	80	○	×
	3. 사고사망 감소 성과	80	80	○	×

❶ 건설공사 발주사업장 평가를 받는 경우 / ❷ 건설공사 발주사업장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3 분야별 평가지표

Ⓐ 안전보건경영체제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및 안전보건경영체제·역량, 안전투자, 안전관리 규정, 안전경영계획 등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 경영체제 (Safety&Health Management System) · 5개 항목	60	A.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 2.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유 3.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60	A.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 2. 안전관리조직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3.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안전관리 중점기관 해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전관리 중점기관]
	30	A.3. 안전보건경영 투자	1. 안전보건 예산 편성 2. 안전보건 예산 집행
	50	A.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1. 안전관리규정의 구성, 제·개정 절차 및 최신화 2. 안전관련 절차서·지침 구성, 제·개정절차 및 최신화
	50	A.5. 안전경영계획 수립	1. 안전경영계획의 목표 및 전략 수립 2. 안전경영계획의 구성 및 이행수준

Ⓑ 안전보건관리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활동 참여, 비상시 대비, 재해조사,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등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관리 (Safety&Health Administration) • 8개 항목	30	B.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1. 건강진단 실시·결과사후관리 2. 작업환경측정 실시계획의 수립, 측정결과 고위험 공정 등의 작업환경개선 3.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실행 4.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조치
	40	B.2.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 지침・계획 2.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 3. 위험성평가 결과 활용
	20	B.3. 안전보건교육	1.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2. 안전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3. 안전보건교육 관리 및 지원
	40	B.4. 관리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1. 관리자 안전보건 인식과 참여수준 2. 근로자(수급업체 포함) 안전보건 인식과 참여수준 3.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아차사고 발굴 등) 제도 운영
	20	B.5. 비상시 대비 및 대응	1. 비상시 대비・대응 관련 지침 2. 비상시 대비・대응 교육 및 훈련 3. 비상시 대비・대응 관련 시설・장비 관리
	20	B.6.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1. 재해(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 지침 등 절차의 관리 2. 재해조사 및 동종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50	B.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1.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지침 수립 2. 적격 수급업체 선정절차 이행・환류 수준 3. 도급사업의 현장 안전보건활동 이행・환류 수준 4.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 등 이행・환류
	30	B.8.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확인 2. 관계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지원 수준 3.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 안전보건활동

사업장 관리상태 및 시정조치 활동 평가를 위한 직영 및 도급사업장과 건설발주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구성

Ⓒ - 1. 직영 및 도급(건설포함) 사업장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 14개 항목	【Ⓒ-1. 직영 및 도급사업장】		
	10 (40)	C.1.1. 기본 안전보건관리	1.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적정 조도확보, 출입문 및 비상구 등의 유지・관리 2.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MSDS 게시 등 관리 3. 작업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15 (40)	C.1.2.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1.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2.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법정검사 실시 및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 3.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비정형작업 시, 불시가동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15 (40)	C.1.3.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1. 전기기계・기구・설비・배선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2. 전로 및 근접 작업 등 전기 작업에 따른 위험방지 조치
	25 (50)	C.1.4. 추락・낙하 등 위험방지 조치	1. 작업장소 및 통로 등에서의 추락 및 낙하 위험 방지조치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설비 등의 붕괴・도괴 등 위험 방지조치
	25 (50)	C.1.5. 화재 등의 위험방지 조치	1. 일반화재 및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가연성물질 등의 화재・폭발・누출예방 조치 2. 인화성 액체・가스 등 제조・취급・저장설비 지역의 폭발위험장소 설정 및 적정 기계기구 선정 구분
	15 (40)	C.1.6.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활동 수준	1.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시설 및 조치 2. 질식위험 작업·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15 (40)	C.1.7.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1.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2. 유해위험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 3.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 괄호 안의 배점은 건설발주 사업장 지표 미적용 기관의 배점

Ⓒ - 2. 건설발주 사업장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 14개 항목	【Ⓒ-2. 건설발주 사업장】		
	20	C.2.1.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체계	1. 건설발주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기준 수립 및 구성·운영 2.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 인프라 구축·운영 3. 발주자의 안전보건역량강화 노력
	20	C.2.2. 건설공사 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활동	1.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산정 및 검토 수준 2.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발굴 수준 3.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의 설계조건 도출 수준 4.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수준
	20	C.2.3. 설계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1.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지원・검토 수준 2. 설계자의 위험성 감소대책 설계반영 수준 3.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수준
	25	C.2.4. 시공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1.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지원·검토 수준 2.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수준 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 활동 수준
	20	C.2.5.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1.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및 업무수행체계 2.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결과 조치
	50	C.2.6.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조치	1.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상태 2. 건설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관리 수준 3. 작업지휘자 배치 관리 수준 4.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상시 안전보건모니터링 결과
	25	C.2.7.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2.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관리 3.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대 조치

Ⓓ 안전보건성과[공통]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및 안전문화 확산, 사고사망 감소 성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성과 (Safety&Health Performance) • 3개 항목	40	D.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1. 안전보건관리 목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성과측정 2. 안전보건활동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근본원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환류
	80	D.2. 안전문화 확산	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및 활동 참여·전개·지원 2. 주요사업・사고사망예방 등과 연계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해관계자 안전문화 확산 사례
	80	D.3. 사고사망 감소 성과	1. 기관의 직영사업소발주현장·수급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사업주 포함)의 사망재해 감소성과

Ⅳ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용

Ⅳ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경영체제

(Safety&Health Management System)

A.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경영체제	-	60
지표 정의	직영 및 도급사업장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추진의지 및 실제 주요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 2.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유 3.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평가 착안 사항	1.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철학, 안전조직 역량지원, 현장활동 참여, 수급업체 및 발주현장 등 이해관계자 지원, 노사소통, 사망사고 예방활동 등 공익적 측면의 안전보건 실천의지(면담 등) ※ 사고사망 발생 기관은 사고사망 대책 수립 등 조치사항 확인 2. 사업특성과 안전보건 여건을 반영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수립과 구성원에 대한 공유 수준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안전기본계획 수립) 3. 안전보건경영회의(정부주재* · 자체), 현장 안전보건점검, 정기 업무보고 실시 등 경영자의 적극적 참여 여부 * 국조실·기재부·노동부 등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관련 회의·워크숍 등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안전조치), 제20조(임원의 직무)
준비 사항	○ 안전보건경영 방침의 작성·게시·공유 증빙자료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관련 회의(정부주재·자체) 및 현장점검 등 실시 증빙자료 ○ 경영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정기보고 실시 증빙자료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최고경영자*가 면담 참여 원칙(평가기간 중 면담이 가능한 일정, 장소 제시) ※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차 상위 경영자 면담 가능하나, 소명자료 제출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A.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경영체제	-	60
지표 정의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수준과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 2. 안전관리조직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3.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안전관리 중점기관 해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전관리 중점기관]**
평가 착안 사항	1. 직제 상 안전관리조직*의 구성과 권한부여, 업무분장 등의 적정성 * 기관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 기획, 실행, 관리 등을 수행하는 조직(부서, 구성인원) **[안전관리 중점기관]** 기관장 직속 전담조직 설치 및 임원급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여부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인력확충), 제8조(전문성 강화)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안전관리 책임자 및 전담조직) 2. 안전관리조직 구성원 역량(적정 자격자, 전문성 등) 및 제고노력(외부교육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수준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인력확충), 제8조(전문성 강화) 3. 안전경영위원회(본사만 해당) 및 안전근로협의체**[안전관리 중점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지침·계획 및 결과 적정성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 안전관리중점 비대상 기관에서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시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 대상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적용함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전관리 중점기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 범위(본사, 직영사업소, 사업분야 별) 및 시스템의 실행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안전기술 개발 등)
준비 사항	○ 직제규정, 인사규정, 안전관리조직 구성에 관련 서류, 조직도 등 ○ 안전관계자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원계획 및 결과, 인사규정 등 ○ 안전경영위원회,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침·계획·결과 관련 서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KOSHA 18001, ISO 45001) 인증서 및 관련 서류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KOSHA 18001은 2022.6.30.까지 유효하며, KOSHA-MS로 전환하여야 함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4득점) ※ N = 1 ~ 4 의 해당점수 합계

A.3. 안전보건경영 투자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경영체제	-	30
지표 정의	안전보건관리・활동을 통한 안전경영 성과 창출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안전보건 예산 편성 2. 안전보건 예산 집행
평가 착안 사항	1. ❶안전 소요예산 조사·분석 등에 따른 합리적인 편성 노력, ❷안전보건 예산 편성 (위험시설 정비, 안전사업비, 교육·훈련, 신제품·기술 개발·구매 등)과 내역의 적정성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안전투자) 2. 안전보건 편성예산 집행·관리의 수준 ※ 사망사고 예방 및 수급업체(건설발주사업장 포함)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진단 및 컨설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노력도
준비 사항	○ 안전 소요예산 조사·분석을 증빙하는 자료 ○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내역 증빙 자료 ※ 전년대비 안전예산 편성·집행 내역 대비표, 구성항목별 주요 집행 세부내역 등 ○ 분기별 집행 계획 및 내역 등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A.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경영체제	-	50
지표 정의	안전보건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규정, 절차・지침의 구성 등의 관리 수준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안전관리 규정의 구성, 제·개정 절차 및 최신화 2. 안전관련 절차서·지침 구성, 제·개정절차 및 최신화
평가 착안 사항	1. ❶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제13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1항의 안전보건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 소방·전기·교통분야 등 관련 법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자 단체 요구사항, 건설발주 현장 안전관리 등 반영 수준 ※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제도 반영 포함 등 ❷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준수, 현행법 내용을 반영한 최신화 수준, 제·개정 절차의 준수 여부 2. ❶「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 기관의 위험·작업 특성을 반영한 지침(지침, 기준, 수칙 등)의 제정 수준 ❷ 법(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법 등) 등의 안전환경 변화·반영 등 최신화 수준
준비 사항	○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련 절차서·지침 등 관련 서류 ○ 안전관리규정 개정에 필요한 관련서류 검토결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서류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A.5. 안전경영계획 수립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경영체제	-	50
지표 정의	기관의 자체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포함한 안전경영계획의 목표 및 전략 수립과정과 세부 실행과제 이행의 적정성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안전경영계획의 목표 및 전략 수립 2. 안전경영계획의 구성 및 이행수준
평가 착안 사항	1. ❶기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조직·업무 특성을 반영한 전략 수립, ❷재해·사고 통계현황 관리 및 보고 절차 마련 수준 2. 안전경영계획의 실행과제 발굴 노력도, 추진방향 및 절차, 담당부서, 소요예산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사업 참여 수준 등 안전경영계획의 이행 수준
준비 사항	○ 안전경영책임계획, 안전관련 사업계획 등 ○ 목표설정, 전략·실행과제 발굴을 위한 활동 사항(회의, 현장 근로자 참여 회의·의견청취, 조사·분석, 통계분석 등)의 증빙 자료 ○ 안전경영계획의 실행과제 추진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장애극복 과정 및 이행결과 등 증빙 자료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 득점 + 2득점) ※ N = 1 ~ 2의 해당점수 합계

Ⅳ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관리

(Safety&Health Administration)

B.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관리	-	30
지표 정의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건강권 확보 사항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건강진단 실시·결과·사후관리 2. 작업환경측정 실시계획의 수립, 측정결과 고위험공정 등의 작업환경개선 3.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시행 4.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조치
평가 착안 사항	1. ❶건강진단 종류에 따른 대상자 파악, 실시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실행 수준, ❷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구분에 따른 이상소견자(C, D)의 파악 및 관리 수준 2. ❶작업환경측정 대상공정의 파악 및 실시, 측정결과의 공유 수준, ❷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50%이상(소음은 노출기준 초과) 발생 공정 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3. ❶고객응대근로자, 업무관련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및 지원의 적정성, ❷근로자 건강 증진활동**(직무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 참고 :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 작성 지침(KOSHA-GUIDE, H-203-2018) ** 참고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9호) ※ 건강이상소견자에 대한 건강개선 활동을 병행하여 평가 4. COVID-19, 독감, 동·식물 등의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조치 수준 ※ 참고 : 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방지 지침(KOSHA-GUIDE H-186-2016)
준비 사항	○ 건강진단 실시계획서, 수검안내, 최근 3년('19~20년) 건강진단 결과표*(일반,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 사후관리**대상자 기록 및 사후관리 내역 서류, 최근 3년('19~21년) 작업환경측정결과표, 건강증진활동 실시계획서, 실행 내역,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 내용 확인자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 서식,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일반건강진단), 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등)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및 조치·개선 사항은 연계 평가 ○ 건강진단 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은 사후관리 결과로 판단하지 않음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4.득점) ※ N = 1 ~ 4 의 해당점수 합계

B.2. 위험성평가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관리	-	40
지표 정의	잠재적 유해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기관과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활동 적정성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위험성평가 지침・계획 2.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 3. 위험성평가 결과 활용
평가 착안 사항	1. ❶위험성평가 지침・실행계획 수립 적정성, ❷수급업체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이행점검 근거(계약, 지침 등) 확보 등 적정성 ※ 참고 :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등 송부(고용노동부, '20.1월) 2. ❶위험성평가 사전준비*・실행・개선대책 수립・개선 수준, ❷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이행상태 점검 및 결과조치의 적정성, ❸위험성평가 과정 중 해당 작업 근로자 참여 * 사전준비 : 조직의 구성, 역할, 아차사고 발굴,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유해인자 파악 자료,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순회점검 결과 등 3. 위험성평가 결과의 공유 및 안전보건활동 활용(위험예지훈련, 안전작업허가, 안전점검 등) 수준
준비 사항	○ 위험성평가 지침 및 실행계획 관련 서류 ○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계약서, 규정 등) ○ 위험성평가(정기·수시) 활동자료 및 실시 결과 ○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실시 자료 ○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결과공유(교육, 게시 등), 위험성평가 활용 증빙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B.3. 안전보건교육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관리	-	20
지표 정의	안전보건지식 습득과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파악 및 계획수립, 시행 수준의 적정성 등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2. 안전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3. 안전보건교육 관리 및 지원
평가 착안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자율적인 주제로 안전보건교육을 수립한 경우 인정 (심폐소생교육, 화재예방교육, 감염병예방 교육 등) 2. 각 대상별 업무 특성·직무·시기 및 상황에 맞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적정성 ※ 교육대상 예시 : 경영진(리더쉽 향상 교육 등), 관리자, 안전업무 담당자,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등 3. 강사의 전문성, 교육 참석 제고, 불참자에 대한 추가 교육 등 과정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 참조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
준비 사항	○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 각종 안전법령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파악, 교육실시 증빙자료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B.4. 관리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관리	-	40
지표 정의	안전보건경영 성과 창출을 위한 구성원 참여와 안전의식 수준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관리자 안전보건 인식과 참여수준 2. 근로자(수급업체 포함) 안전보건 인식과 참여수준 3.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아차사고 발굴 등) 제도 운영
평가 착안 사항	1. 관리자*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 인식수준(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해당공정 위험성 인지 및 예방활동 참여, 해당공정의 주요 안전작업지침서 내용, 비상조치 계획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장, 직·반장 등 2. 근로자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 인식수준(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개인보호구 착용기준 및 착용방법, 비상시 조치사항, 최근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내용 등) 3. 관리자 및 근로자(수급업체 등 포함),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아차사고(Near Miss)* 발굴제도 등 안전보건 신고·제안의 지침(계획)수립 및 시행·채택·포상 수준 * 공공기관 직영, 수급업체, 건설현장 노동자 등의 작업환경 개선 요구 등 포함 * 위험상황 신고, 위험성평가시 사전 설문, 별도 계획에 따른 아차사고 사례 수집 등의 다양한 활동 인정
준비 사항	○ 신고·제안·포상제도 관련 지침 등 계획서 ○ 신고·제안·포상제도 및 기록 유지관리·개선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주요공정·업무(위험·취약 등) 관리자 및 근로자 현장면담 실시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B.5. 비상시 대비 및 대응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관리	-	20
지표 정의	비상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비·대응 수준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비상시 대비·대응 관련 지침 2. 비상시 대비·대응 교육 및 훈련 3. 비상시 대비·대응 관련 시설·장비 관리* * 외부 이용객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개선내용 포함
평가 착안 사항	1. 사고시나리오·비상조치계획 등 비상시 대비·대응 지침 구성과 내용의 적정성* * 시나리오 · 계획 등 지침 마련시 지역사회 및 주민안전 등 고려 여부 포함 2. 비상시 대비·대응 교육 및 훈련과 그에 따른 개선대책 이행의 적정성 3. 비상시 대비·대응 관련 시설·장비** 등에 대한 관리지침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 비상경보 및 방송시설, 안내표지, 대피로, 구급·구난용품(AED 등), 비상구, 비상조명, 비상 대피시설, 비상발전기(비상전원), 소방설비 등
준비 사항	○ 비상시 대비·대응 지침(매뉴얼, 사고시나리오·비상조치계획 등) ○ 비상시 대비·대응 교육·훈련 계획 및 실행 결과 ○ 비상시 대비·대응 시설·장비 관리지침 및 보유목록, 점검내역, 변경관리 내역 ○ 대국민 이용시설 보유 현황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참고 : ①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101-2012) ② 주요 사고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104-2013) ③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163-2017) ④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84-2016)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B.6.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관리	-	20
지표 정의	재해조사 및 동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수준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재해(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 지침 등 절차의 관리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조문별 설명자료 '안전사고는 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사망 또는 부상으로 판정된 건' 2. 재해조사 및 동종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평가 착안 사항	1. 재해 원인조사(지침, 매뉴얼, 절차서 등) 내용의 적정성 ※ 참고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4조(사고기록 및 보존) 2. ❶사고, 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 부서로의 전달체계(보고, 통보 등) ❷재해 조사보고서 작성 여부, 시기·방법, 조사팀 구성, 원인,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전파 등의 적정성, ❸재해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및 활용 ※ 참고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4조(사고기록 및 보존) ※ 참고 : 업무상 사고조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5-2017), 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106-2016)
준비 사항	○ 재해 원인조사 지침(매뉴얼, 절차서 등) ○ 재해 원인조사 보고서 및 재발방지 대책(해당 시) ○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실제 개선된 현장사례(해당 시)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B.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관리	-	50
지표 정의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성 및 안전보건활동 이행·환류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지침 수립 2. 적격 수급업체 선정절차 이행・환류 수준 3. 도급사업의 현장 안전보건활동 이행・환류 수준 4.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 등 이행·환류
평가 착안 사항	1. 수급업체 현황 파악 및 관리, 적격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협의체, 안전점검 등 위험예방조치,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지침 수립의 적정성 ※ 참고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2. ❶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등) 제시 등 입찰단계의 조치사항 ❷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등 계약단계의 조치사항 ❸수급업체 안전수준 재평가 및 환류 활동의 이행 수준 3. ❶수급업체 작업(공정) 현황관리, ❷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❸작업시작 전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❹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구비 등 현장 안전보건활동의 이행·환류 수준 4.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계획·실행, 도급 금지·승인, 하도급금지(법 제58조~제60조)의 적정성
준비 사항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지침(절차서 등) ○ 적격 수급업체 선정과 관련한 서류 및 수급업체 현황 ○ 관계수급업체 작업관련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등에 관련된 서류 - 법적 요구사항 이외에 추가로 산재예방을 위해 지원한 사항 또는 실적 서류 포함 ○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 도급금지 및 하도급금지 등에 관한 서류
기타 사항	○ 안전, 계약 및 도급사업 관리부서원의 면담실시 및 현장확인을 통해 평가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4.득점) ※ N = 1. ~ 4.의 해당점수 합계

B.8.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관리	-	30
지표 정의	수급업체가 협력적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위생시설 등 인프라 지원과 시설·장비 개선 및 보호구제공 등의 안전·보건조치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확인 2. 관계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지원 수준 3.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평가 착안 사항	1.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정기·채용시·특별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특별교육 실시 확인 2.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 등의 설치장소 제공 또는 이용 협조 수준 3. 수급인에 대한 도급작업 관련한 안전보건 정보제공
준비 사항	○ 상주와 비상주 구분한 관계수급업체 현황(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작업내역, 연락처 포함) ○ 수급업체에 교육 및 위생시설 지원, 안전보건조치에 관련된 규정 ○ 안전보건정보 제공, 이행확인 및 시정조치 등에 관련된 서류 ○ 관계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관련 지원실적, 교육 이행확인실적 서류 ○ 관계수급업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 현황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본 지표는 평가 당해 연도에 종료 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도급에 대해 평가 ○ 현장 확인, 도급 및 수급 업체 관계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평가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Ⅳ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C-1 직영 및 도급(건설포함) 사업장

C.1.1. 기본 안전보건관리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건설발주 포함 시	건설발주 미포함 시
©안전보건활동	©-1. 직영 및 도급사업장	10	40
지표 정의	공사현장, 작업장, 사무실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적정 조도확보, 출입문 및 비상구 등의 유지·관리 2.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MSDS 게시 등 관리 3. 작업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평가 착안 사항	1.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적정 조도확보, 출입문 및 비상구,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의 유지·관리 적정성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MSDS 게시 등 관리 적정성 3. 작업 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적정성(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내화학성 장갑, 안전대, 방진·방독 마스크 등 적정 지급 및 착용 여부)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9조
준비 사항	○ 화학물질 취급목록(현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개인보호구 지급 대장, 건물의 레이아웃 등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주요 현장 및 근로자의 작업 실시 내용 확인을 통한 평가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C.1.2.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건설발주 포함 시	건설발주 미포함 시
©안전보건활동	©-1. 직영 및 도급사업장	15	40
지표 정의	공사현장,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예방조치·활동 수준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2.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법정검사 실시 및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 3.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비정형작업(정비·점검·청소 등) 시, 불시가동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평가 착안 사항	1. 자체 보유 또는 반입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포함)에 대한 적격품의 선정과 안전조치 및 관리상태 수준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련법에 의한 법정검사 실시, 검사필증 부착상태 등 관리 및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 수준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제1절~제4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등 3. 기계·기구·설비(전기설비 포함)에 대한 비정형작업(정비·점검·청소 등) 시 전원 차단조치(Lock-Out Tag-Out; 안전 잠금장치-안전꼬리표), 감시인 배치(필요시) 등 작업절차서를 준수한 작업수행 및 위험방지조치 적정성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준비 사항	○ 기계·기구·설비 목록 및 배치도 ○ 법정검사 대상 기계·기구·설비 목록 및 검사·점검 기록 ○ 기계·기구·설비 자체점검 매뉴얼 및 점검기록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주요 현장 및 근로자 확인을 통한 평가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C.1.3.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건설발주 포함 시	건설발주 미포함 시
©안전보건활동	©-1. 직영 및 도급사업장	15	40
지표 정의	전기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 및 전기 작업 시 감전 등 사고 예방조치의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전기기계·기구・설비・배선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2. 전로 및 근접 작업 등 전기 작업에 따른 위험방지 조치
평가 착안 사항	1. 전기기계·기구・설비, 배선 등으로 한 감전재해 등의 위험방지 조치 ※ 송·수전설비(변전실·변압기·배전반 등), 전동기, 용접기, 전동공구, 사무공간 내 전기기구 등 2. 작업자 자격의 적정성, 전원 차단·투입 관리, 이격거리 준수, 작업공간 확보, 적정 작업 기구·장치·보호구 확보 및 사용 등의 안전작업 기준·절차의 준수 ※ 충전부 방호, 절연, 피뢰,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활선작업용 기구 및 보호구 관리, 출입금지 조치 등 위험방지조치 수준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3장
준비 사항	○ 전기기계·기구 등의 안전작업 절차 및 조치 기준 ○ 정전 및 활선작업 등에 사용되는 안전장비・기구 및 보호구 등의 확보 지급・내역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C.1.4. 추락 · 낙하 등 위험방지 조치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건설발주 포함 시	건설발주 미포함 시
Ⓒ안전보건활동	Ⓒ-1. 직영 및 도급사업장	25	50
지표 정의	작업장소 및 구조물 등에서의 추락·낙하·붕괴 예방조치 및 유지관리 적정성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작업장소 및 통로 등에서의 추락 및 낙하 위험 방지조치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설비 등의 붕괴·도괴 등 위험 방지조치
평가 착안 사항	1. 건축물 등의 개구부 관리, 안전대 부착설비, 승강설비, 비계 작업발판 설치 등 작업현장의 추락 및 낙하 위험 방지 조치 적정성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2장 및 6장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설비(적재물, 구조물, 가설물 등)의 내·외력*에 의한 붕괴·도괴 등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진단·자체점검 및 조치의 적정성 * 기둥·보·외벽 등 주요 구조부 손상, 균열, 침하, 적재물 및 구축물의 무게중심 편향, 충돌 등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2조 등
준비 사항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설비(적재물, 구조물, 가설물 등) 자체점검활동 자료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 설비 등의 구조검토 등 안정성 검토결과서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은 제외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C.1.5. 화재 등의 위험방지 조치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건설발주 포함 시	건설발주 미포함 시
©안전보건활동	©-1. 직영 및 도급사업장	25	50
지표 정의	일반화재, 위험물・유해화학물질・가연성물질 등에 의한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 방지활동의 수준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일반화재 및 위험물・유해화학물질・가연성물질 등의 화재·폭발·누출예방 조치 2. 인화성 액체·가스 등 제조·취급·저장설비 지역의 폭발위험장소 설정 및 적정 기계기구 선정 구분
평가 착안 사항	1. ❶일반・유류・가스・전기・금속화재 등 화재의 종류에 따른 안전조치 및 소화대책의 적정성, ❷인화성 액체·가스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의 화재·폭발·누출 예방조치 및 해당 장소에서의 화재 위험 작업시 관리 및 예방장비·시설* 등의 적정성 * 화재감시자 배치 및 가스누출감지기, 용접불티 비산방지 방염포, 소화설비 등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등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적용여부 검토 및 구분도 작성, 폭발위험장소 방폭기계기구 선정·설치 및 관리의 적정성 ※ 참고 :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079-10-1, KS C IEC 60079-10-2 ※ 저압(0.01MPaG 미만)의 연료가스[저압(0.1MPaG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취사, 물의 가열 용도의 보일러만 KS C IEC 60079-10-1:2015 적용범위에서 제외
준비 사항	○ 인화성 액체·가스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 목록(현황), 위험지역의 폭발위험장소 검토 서류 및 구분도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화학물질 보관장소 등 일부 현장 확인을 통한 위험방지 조치 수준 평가 ○ 화재·폭발·누출 비상 시 대응을 위한 소방설비 등은 'B.5.3'에서 평가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C.1.6.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활동 수준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건설발주 포함 시	건설발주 미포함 시
©안전보건활동	©-1. 직영 및 도급사업장	15	40
지표 정의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에 의한 사고사망 예방활동 수준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시설 및 조치 2. 질식위험 작업·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 착안 사항	1.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급성·만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관리 상태 및 사용위치·장소·작업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시설 및 주변시설(바닥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사업주 포함)에 대한 위험성주지 및 보호조치 등 적정성 평가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1장~3장 2. ❶맨홀, 지하 물탱크, 정화조 등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의 적정성(수급업체 포함), ❷예방장비·시설* 등의 운용, 구조 훈련 등의 적정성 평가 * 공기호흡기, 측정장비(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환기장치(배풍기(포터블팬)), 응급구조장비, 안전대 등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0장
준비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화학물질 취급장소 현황 ○ 질식위험공간 파악 현황 등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 밀폐공간 예방장비 및 구조훈련에 관한 자료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화학물질 취급장소 및 질식 위험공간 현장 확인을 통한 평가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C.1.7.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건설발주 포함 시	건설발주 미포함 시
ⓒ안전보건활동	ⓒ-1. 직영 및 도급사업장	15	40
지표 정의	위험작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작업허가 등 작업안전관리 제도의 적정성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2. 유해위험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 3.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평가 착안 사항	1. 안전작업허가 지침에 따른 위험작업(화기취급, 정전작업, 중량물 취급 등)에 대한 허가와 승인권자의 안전조치 승인여부, 현장입회 및 확인 여부 등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의 적정성 ※ 참고 : 안전작업 허가지침(KOSHA GUIDE P-94-2019)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 작업시작 전 점검,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 감시인, 화재감시자 배치 운용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점검·개선·실행내용의 적정성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8조, 제241조의2 3. 작업중지 요청제 매뉴얼·절차·지침의 제정 또는 수립 여부 및 운영의 적정성 ※ 참고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
준비 사항	○ 고위험 작업(정비·보수 작업, 반복작업 등) 작업표준 또는 절차서 ○ 안전작업허가제도 관련 매뉴얼·절차·지침, 작업중지 요청제 관련 매뉴얼·절차·지침 ※ 실제 발행된 안전작업허가서 및 작업중지 요청 사례(해당 시) ○ 원재료, 사용물질, 시설, 위험장소 등에 대한 관리기준 및 점검 실적 자료 ○ 위험작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작업시작 전 점검 계획 및 실행 실적 자료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화학물질 취급장소 및 질식 위험공간 현장 확인을 통한 평가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Ⅳ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C-2 건설발주 사업장

C.2.1.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체계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2. 건설발주 사업장	20
지표 정의	건설발주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체계 구축 수준과 안전보건 역량 강화 노력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건설발주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기준 수립 및 구성・운영 2.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 인프라 구축・운영 3. 발주자의 안전보건역량강화 노력
평가 착안 사항	1. 건설발주현장 대한 발주자가 수립한 ❶안전보건관리기준・지침・계획의 유무와 역할 및 책임 등 구성, ❷해당 현장에 대한 적용 수준을 평가 ※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 위주의 기준·지침·계획 등을 평가 2.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실제 운용하고 있는 건설발주 현황, 공사 진척도 및 위험공종 현황 관리 시스템 등 안전보건관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수준을 평가 3.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부서)의 산재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내・외부교육, 자격 등 기관의 지원체계 및 노력을 평가 ※ 해당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부서(직원) 대상으로 평가
준비 사항	○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기준(지침, 계획 등) ○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분장 현황 및 수행 결과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C.2.2. 건설공사 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활동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2. 건설발주 사업장	20
지표 정의	건설공사 계획 수립 시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적정 공사금액 및 기간 산정, 중점 관리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설계조건 도출 수준과 발주자 안전활동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산정 및 검토 수준 2.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발굴 수준 3.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의 설계조건 도출 수준 4.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수준
평가 착안 사항	1.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정 시 안전보건 확보내역,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정 시 적정성 검토 방법의 절차 및 적정성 2.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❶ 기관의 지원체계와 활동사항, ❷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근원적 원인 반영 수준 및 해당 공사와의 적합성 3.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설계조건 도출 수준*과 건설 분야 안전 전문가 참여수준 * 유해·위험요인의 개선대책이 실시 설계에 도면 등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조건을 도출한 수준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수준(해당 시) ❶ 기본안전보건대장 구성 내용 및 충실성, ❷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시기, 작성자 및 확인자 수준, 이력 관리 등 관리 수준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등에 관한 고시 제2020-22호(고용노동부)
준비 사항	○ 공사계획수립 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결과서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발굴 내용 및 설계요구사항 관련 서류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세부 평가사항 4.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됨. * 총 공사금액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 (단,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공사를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3.득점 + 4.득점) ※ N = 1. ~ 4. 의 해당점수 합계

C.2.3. 설계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2. 건설발주 사업장	20
지표 정의	설계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발주자의 지원·검토 및 설계반영 수준과 설계 단계에서의 발주자 안전보건 활동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지원·검토 수준 2. 설계자의 위험성 감소대책 설계반영 수준 3.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 활동수준
평가 착안 사항	1. 설계자가 수행하는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발주자의 ❶지원 기준 및 계획, ❷위험성평가 지원·검토 활동사항 및 결과 2. 실시설계(내역 및 도면) 시 발주자의 설계조건과 설계자가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 반영 수준 및 건설 분야 안전 전문가 참여 수준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수준(해당 시) ❶설계안전보건대장 구성 내용 및 충실성, ❷ 기본안전보건대장 공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작성자 및 확인자 수준, 이력 관리 등 관리수준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등에 관한 고시 제2020-22호(고용노동부)
준비 사항	○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지원 기준(계획 등)과 활동사항 관련 서류 ○ 위험성 감소대책과 설계조건 등이 반영된 실시설계 결과물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세부 평가사항 3.은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됨.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C.2.4. 시공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2. 건설발주 사업장	25
지표 정의	시공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활동에 대한 발주자의 지원·검토 및 이행점검 수준과 시공 단계에서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지원・검토 수준 2.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수준 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 활동
평가 착안 사항	1. 시공자가 수행하는 위험성평가 내실화를 위한 발주자의 ❶지원 기준 및 계획, ❷위험성평가 지원・검토 활동사항 및 결과 2. 시공자가 수립한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의 점검 수준(점검 기준 및 계획, 이행점검 결과 처리 및 환류 조치 등)과 건설 분야 안전 전문가 참여수준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수준(해당 시) ❶ 공사안전보건대장 구성 내용 및 충실성, ❷설계안전보건대장 공유,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 조치, 재해예방전문기관 계약 체결 및 기술지도 조치, 작성자 및 확인자 수준 등 관리 수준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020-22호
준비 사항	○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지원 기준(계획 등)과 활동사항 관련 서류 ○ 시공자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발주자 이행점검 결과물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세부 평가사항 3.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됨.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C.2.5.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2. 건설발주 사업장	20
지표 정의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가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수행체계와 활동 내용 및 조치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및 업무수행체계 2.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결과 조치
평가 착안 사항	1. 안전보건조정자의 ❶선임 또는 지정시기,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 도급업체 통보 및 공유수준, ❷안전보건조정자 업무 기준·수행계획의 구체성과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의 지원 체계 2. 혼재된 위험작업 발생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조정 활동 내용과 결과 등의 관리수준 • 혼재된 위험작업 파악 활동에 관한사항 • 혼재된 위험작업의 위험성 파악에 관한사항 • 혼재된 위험작업의 시기·내용에 관한사항 • 위험작업의 안전조치 등의 조정에 관한사항 • 각각의 공사 도급인과 정보공유에 관한사항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시행령 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시행령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준비 사항	○ 안전보건조정자 전문성, 배치 시기 및 도급업체와의 공유 관련 서류 ○ 안전보건조정자 업무기준(계획 등)과 기관의 지원체계 관련 서류 ○ 안전보건조정자 회의, 점검, 환류 등 업무활동 관련 서류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본 평가 지표는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공사를 분리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해당됨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C.2.6.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조치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2. 건설발주 사업장	50
지표 정의	발주자의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구현되는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상태와 고위험작업에서의 작업지휘자 배치 및 작업계획서 이행·관리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상태 2. 건설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관리 수준 3. 작업지휘자 배치 관리 수준 4.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상시 안전보건모니터링 결과
평가 착안 사항	1.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순회를 통한 현장 안전보건조치 등 아래사항을 평가 • 개인보호구 착용 및 작업장 통로확보 등 기본안전조치 • 추락·낙하 등 위험방지조치 • 기계·기구·설비·장비로 인한 위험방지조치 • 붕괴·도괴, 넘어짐, 충돌, 끼임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조치 • 전기에 의한 감전예방조치 •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조치 •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등 2. 발주현장에서 작성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수준과 이행 관리 수준을 평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작업(예시)>**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하는 작업 • 굴착면의 높이 2M이상 지반굴착작업 • 터널굴착작업 •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변경작업 • 건물 등의 해체작업 •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3. 발주현장에서 아래의 작업에 대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지휘자 지정 및 배치 등 관리 수준을 평가 **<작업지휘자 지정 대상 작업(예시)>** •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 2M이상 지반굴착작업 •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변경작업 • 중량물의 취급작업 • 항타기·항발기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 시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4. 공단 등이 공공기관의 발주현장에 대해 수시로 수행하는 '패트롤(Patrol)현장점검' 결과를 반영 ※ 패트롤(Patrol)현장 점검 : 공공기관의 건설발주현장에 대하여 공단 등이 수준평가와 별개로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 점검으로 점검 종료 후 '사망사고 위험 시정지시서'가 발급됨
준비 사항	○ 작업계획서 및 작업지휘자 관련 서류는 현장 순회 시 확인예정
기타 사항	○ 평가와 관련하여 작업일정을 조정하거나 일시 중단하지 않도록 관리요망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4.득점) ※ N = 1. ~ 4. 의 해당점수 합계

C.2.7.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2. 건설발주 사업장	25
지표 정의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발주자가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발주현장의 위생·휴게시설 및 근로자 안전보건 확대조치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2.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관리 3.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대 조치
평가 착안 사항	1. ❶건설공사 종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적용의 적정성, 공사입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내역 및 금액 사전 주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조정 사유 발생 시 처리기준 및 적용수준 ❷목적 외 사용여부 및 투명성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2.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에 대한 설치·운영과 유지관리의 적정성을 평가 •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 탈의시설, 세면 및 목욕시설(필요시), 휴게실, 화장실 등 • 남녀구분 설치, 청결·유지 및 정상 작동 여부에 관한사항 ※ 참고 :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가이드(고용노동부, 2019.6.) 3. 근로자 안전보건 보호조치 확대 수준 및 적정성을 평가 ❶ 휴일작업 시 안전보건관리(일요휴무제 준수 포함), 미세먼지·폭염·한파 등 기상이변 발생 시 조치기준 및 활동, ❷ 2인1조 작업(단독작업금지) 관리, 작업중지요청제 및 위험신고제 운영과 활동 ※ 참고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2019.3)
준비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 공사입찰 시 고지내용 ○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보건 보호조치 기준 및 활동 관련 사항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Ⅳ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 성과

(Safety&Health Performance)

D.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 성과	-	40
지표 정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성과측정 및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가치 검토 및 환류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안전보건관리 목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성과측정 2. 안전보건활동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근본원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환류
평가 착안 사항	1. 안전경영계획 각 지표에서 제시한 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하여 계획된 성과측정의 원칙, 계획의 이행정도와 목표의 달성정도의 확인, 문제점 도출 2. 전년도 수준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 자체 발굴한 안전보건상 문제점과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한 경영자검토, 안전보건활동계획 등 환류 수준
준비 사항	○ 전년도 수준평가 결과 검토 현황 자료를 포함한 자체 안전보건활동 성과측정 계획서 ○ 성과측정 계획서에 대한 경영자 검토 확인 자료 ○ 성과측정 관련 시정조치·개선계획 수립·이행 관련 문서 등 ※ 참고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구축에 관한 지침(KOSHA GUIDE G-80-2012) <부록 4> 성과측정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D.2. 안전문화 확산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 성과	-	80
지표 정의	안전보건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및 활동 참여·전개·지원 2. 주요사업·사망사고예방 등과 연계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해관계자 안전문화 확산 사례
평가 착안 사항	1. 기관의 안전문화 추진 계획 및 확산 노력도(4・4・4 안전점검의 날, 공공기관 홈페이지, 방송, 캠페인, 경진대회, 안전 신기술·신제품 개발·지원·사용 등) ※ 참고 : 기획재정부(2019.3.)『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2. [Best Practice]주요사업과 연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해관계자(지역사회·지역주민 등)의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우수 활동사례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연계성	○ 사망사고 감소 활동과의 연계성 ○ 기관 고유 사업과의 연계성
활동	○ 사회적 안전가치 확산을 위한 전략 및 과제의 설정 ○ 문제해결, 개선발전 활동노력 ○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자의 참여, 인력・예산의 지원 수준 ○ 노·사의 협력정도
성과	○ 안전가치 확산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체계 마련 ○ 사망사고 예방 기대효과 및 성과
확산	○ 수급업체, 발주현장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안전활동 참여 유도 ○ 타 기관의 활용 가능성

	자율적 활동사례(예시) **기관고유기능**: 작업장 안전설비 보조금 지급 사회기반시설(SOC) 운영·유지 → **안전문화 확산사례**: · TOP10 고위험작업 One Point Lesson 시트 개발·보급 · 근로자 안전의식수준향상 프로그램 보급·활용 · 사고예방을 위한 12대 골든룰 개발·운영 · 고위험작업 등급제 도입·관리를 통한 사고예방
준비 사항	○ 안전문화 확산 추진계획 및 참여·전개·지원 실적 증빙 ○ 4·4·4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 및 실적, 기타 캠페인, 대중매체 홍보 등 주요 추진사례 ○ **우수 사례 1건**(3page 이내로 작성)에 대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제출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D.3. 사고사망 감소 성과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 성과	-	80
지표 정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종사하는 직영, 수급업체, 발주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사업주 포함)에 대한 사고사망 감소 성과를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 기관의 직영사업소 · 수급업체 · 발주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사업주 포함)의 사망재해 감소성과

평가 착안 사항

○ 사고사망 감소성과를 사고사망자 증감인원수와 증감률을 조합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산식 ①
<사망재해 감소 시 >

$$40+\left\{('20년ⓓ-'21년ⓓ)+\frac{'20년ⓓ-'21년ⓓ}{'20년ⓓ}\right\}\times 10$$

산식 ②
<사망재해 증가 시>

$$40+\left\{('20년ⓓ-'21년ⓓ)+\left(\frac{'21년ⓓ-'20년ⓓ}{'21년ⓓ}-1\right)\right\}\times 10$$

※ ⓓ : 사고사망자 수

❖ '21년도의 사망자 수가 없는 경우 최고점(80) 적용

❖ 사망재해가 감소하여 산식①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산출값은 최고 80으로 제한하고, 산출값에 0.95를 곱하여 점수 적용

❖ 전년도와 사망자수 동일 시 아래점수 적용

인원수	점수	인원수	점수	인원수	점수
1	27.5	4	22.3	7	21.3
2	24.2	5	21.8	8	21.2
3	22.9	6	21.5	9	21.1

	※ 사고사망자 수 : 해당연도 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6조(조사대상재해 등)에 따라 조사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처리된 해당연도 사고사망자(사망일 기준). 단,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와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운수업, 음식숙박업의 교통사고는 산입 함) - 해당연도에 사고가 발생하고 익년도에 사망한 경우 : 익년도 사고사망자 수로 집계 ※ 공공기관 간의 계약 등에 의해 도급(발주 포함)한 현장에서 사고사망(관계수급인 포함)이 발생한 경우, 도급(발주)과 수급에 해당하는 기관 모두에 사고사망자 수를 산입 ※ 직영·수급업체·발주현장 사고사망 관련하여, 은폐로 판명된 건이 확인되거나, 허위·누락·미제출·제출지연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평가심의 위원회에서 점수 하향 조정(산재은폐가 고의적인 것으로 확인 시 최하점수 부여)
준비 사항	○ 최근 2년간 발생한 직영·수급업체·발주현장 근로자 사고사망 발생현황(양식 별도송부)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1.득점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

제정 2021. 5. 18. 시행 2022. 5. 19.

직무 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위반 시 공직자 본인과 제3자 모두 처벌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 금지!** ➲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 취득금지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직무관련자와 사적이해관계가 있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업무 회피!** ➲ 직무관련자 :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조치를 요구하거나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 ➲ 사적이해관계자 : 가족, 본인·가족이 임직원인 법인·단체, 재직했던(2년 이내) 법인·단체 등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신고 ☆ 직무관련자는 내부직원도 포함하므로 직원 간 금전거래도 반드시 신고	**직무관련자와 금전 등을 거래를 하는 경우 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신고대상거래 : 금전 차용, 유가증권 및 부동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 체결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 금지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 · 직무관련자에게 조언·자문을 제공해 대가를 받는 행위 ·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소속기관과 관련된 상대방에게 대리·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신고!** ➲ 사적 접촉 :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공단의 고위공직자: 임원]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담당자의 가족 채용 금지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자식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자 제재

누구든지 위반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 위반	그 밖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